

회원 수칙 및 회비 운영 규정

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수칙 및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을
제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.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“대한요양보호사협회”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회비
관리를 위해 상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가입)

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구비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사무처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
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다.
- ② CMS 절차를 통한 회비납부 절차 완료,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등록을
통한 회비납부를 진행한다.

제3조(회비 납입의 의무)

- ① 회원은 정관 제2장 제9조 2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,
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, 1
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.
- ② 회비는 입회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며 선납을 원칙
으로 하되, 회원의 사정에 의해 월납이 가능하도록 한다.

제4조(회원의 구분)

- ① 회원은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, 후원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후
원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관리한다.
- ② 회원은 요청에 의해 평생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.

제5조(회비의 종류)

- ① 회비는 회원의 회비와 이사회비로 구분하며, 행사 또는 본 회의 운영
을 위해 후원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후원회원은 본 규정 2

조 회비 납입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다.

② 지부 및 지회 등 본회 산하의 조직에서 해당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회비를 정할 수 있다.

제6조(회비의 금액)

① 회비는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, 개인회비는 연 1만원 이상으로 하고, 회원의 상황에 따라 월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월 1천원 이상으로 한다.

② 이사회비는 연 50만원 이상, 이사의 상황에 따라 월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월 5만원 이상으로 하고, 지회장은 연 20만원 이상, 월 2만원 이상으로 한다.

③ 평생회원의 회비는 500만원 이상으로 정하며, 후원회원과는 별도로 관리하며 평생회원의 자격은 개인으로 한정한다.

제7조(회비의 관리)

①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한다.

② 회비는 본 회 명의로 은행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, 본 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에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사무처는 회비 수입, 지출에 대한 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,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.

④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고, 감사 보고를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부 및 지회 회비)

① 지역 지부 및 지회의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중앙 사무국에서 관리한다.

② 회비의 지역 배분은 중앙, 지부, 지회에 분배하고 그 비율은 5:1:4의 비율로 한다.

③ 지부 및 지회에서 별도의 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후원회비는 제2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9조(회비의 청산)

본 회의 해산 등으로 회비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본 회 정관에 따라야 하며,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

부 칙

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.

2024. 8. 20.

대한요양보호사협회
회장 고재경 (인)